

主要國의 農畜產物基金制度

I. 美 國

1. 概要

美國은 農產物을 價格안정 및 農家收入보장을 위해 1933년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를 설립, 基金을 조성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기금은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지원되며 축산물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2.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가. 設立 및 運營

일명 農業銀行(Agriculture's Bank)이라고 불리는 CCC는 1933년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에 의 한 公企業(Government-owned and Operated Corporation)으로 農務부장관에 의해 제청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理事會(Board of Directors)와 16명의 관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8명의 위원 및 16명의 관리는 美農務部소속 관리이기도 하다.

이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은 美농무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農家에 대한 價格지원, 국내 농산물 收買 및 販賣 활동등은 美농무부의 한 부서인 ASCS(The Agricultural Stabilization and Conservation Service)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시장개발·수매된 농산물의 해외판매활동 등은 FAS(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나. 基金

○ 基金造成방법 및 규모

美行政部の 다른기관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CCC의 경우 사전에 소요되는 자금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 기금의 규모가 300억弗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금 범위내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소요자금을 美財務部에서 용자해 시행하며, 자금 집행내역을 다음 회계년도에 國會에 보고해서 결손자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보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基金運營방법

CCC기금은 議會제정 農業관련법안에 규정된 사업내용에 따라 사용되는데 농업관련 기본법은 49년에 제정된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49이며, 이 법안은 4~5년 간격으로 일부 개정해서 집행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개정법안은 85년에 제정된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이다. 이 개정법안에 의해 현재 농산물에 시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The Nonrecourse Loan Program : 쌀·밀·콩·옥수수·담배 등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農家支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참가여부는 농가의 선택에 달려 있다. 농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미래수확량을 담보로 資金을 용자받을 수 있으며(용자금액은 농산물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름), 수확기의 穀物

價에 따라 융자금액을 반환하든지 아니면 곡물을 정부에 제공하든지는 농가가 선택할 수 있다.

— Production Retirement Programs : 쌀·밀·옥수수·담배·면화 등에 적용되고 있는데 혜택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농산물 耕作面積을 줄여야 한다.

— Deficiency Payments : CCC운영프로그램에 참가한 농가에 대해 경작농작물의 價格이 Target Price(의회에서 결정)보다 낮을 경우 農家收入의 안정을 위해 차액만큼의 금액을 농가에 지불하는 것이다.

— Export Enhancement Program : 美國농가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세계 농산물시장에 있어 EC產 농작물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美國농가가 外國產 농작물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世界市場價格에 맞는 낮은 가격으로 지정농산물을 특정지역에 수출했을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농가에 보너스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품목은 밀·쌀·보리·달걀·식용유 등이 있으며, 해당지역은 방글라데시·이집트·中國·홍콩·印度·사우디 등 63개국이다.

○ 基金運營현황 : CCC는 87회계년도에 223억 7,780만弗의 결손이 났는데, 이는 86회계년도의 269억 3,650만弗에 비하면 약간 줄어들었으나 80년도의 38억 2,510만弗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3. 기타사항

美國의 농가에 대한 지원은 CCC基金에 의해 추진되며 기타 補證金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축산물에 대한 租稅감면제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쌀·밀·콩·옥수수·담배 등에 대한 政府의 지원제도는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CCC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쇠고기·포도주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지원제도는 없으나 市場開放 요청, 덤핑 및 상계관계 부과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II. 캐나다

1. 農産物

가. 基金造成방법 : 穀物생산농가와 聯邦政府 공동출연금으로 조성

○ 農民부담 : 연간 곡물생산소득 실령내에서 소득의 1~2.5%를 기금으로 출연(기금 財政상태 및 곡물재배현황을 감안, 政府에서 부담률 결정)

○ 聯邦政府부담 : 농민부담금 + 곡물생산소득의 2%

* 산출 예 : 86/87곡물년도(86년 7월 1일~87년 6월 30일)의 경우 곡물생산소득 실령은 C\$6만, 농민부담률은 1%, 이에따라 농민의 최고부담금은 C\$600이었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 출연금은 C\$1,800이었다.

나. 基金의 성격

한발·風水害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곡물생산 감축, 作況변동에 따른 價格하락 및 경작비용 증가 등 농가수입을 위협하는 제반여건 변화로부터 농민의 안정적 收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제도이다.

다. 設立년도 : 1976년 4월 1일

라. 基金運營방법

○ 기금운영 : 이 기금은 위니펙 소재 Western Grain Stabilization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聯邦政府에서 부담한다.

○ 가입자격 및 수혜대상 곡물

— 캐나다 市民또는 移民者로서 실질적인 耕作農家(기업농 포함)는 누구나 가입 가능

— 수혜대상 곡물은 小麥을 포함해 Barley·Oats·Rye·Flax·Cavola 및 Mustard Seed 등 7개 곡물

○ 補助金 산출 및 지급

— 農家의 실질소득이 지난 5개년치의 평균을 밑돌 경우 보조금 지급

— 산출방법

A : 해당년도의 농가 실질소득(곡물판매대금 - 경작비용)

B : 지난 5년간의 농가 실질소득 평균치

S : 보조금

$S = B - A$

마.基金額

○ 87년 6월 30일 현재 C\$8억800만의赤字 기록

- 76~87년간중 기금조성액 : C\$18억6,800만

- 76~87년간중 기금지출액 : C\$26억7,600만

○ 부족액은 향후 기금이 黑字일 때 이자포함 상환조건으로 聯邦政府에서 차용 지출한다.

2. 畜産物

가. 基金造成방법

○ 소 飼育家·州政府 및 연방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출연

○ NSC(National Stabilization Committee)가 매분기 초 출연금 규모 및 납부일자를 사육가에게 통보

나. 基金의 성격: 소 販賣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육농가의 손실을 補塡해주기 위해 사육가·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운영예정인 소값 安定化기금이다(주정부와 연방정부 합의시 연장 가능).

다. 設立년도: 도살용 소 기금은 1986년 6월 30일에 조성되었으며, 1987년 7월 31일에 사육용 소 기금 및 도살용·사육용 綜合基金이 추가됐다.

라. 基金運營방법

캐나다 소 飼育者協會(Canadian Cattlemen's Association) 추천 3인 및 州政府·聯邦政府를 대표하는 각 3인에 의해 NSC를 구성 관리하며, 이에 수반되는 운영경비는 州政府 및 연방정부에서 부담한다.

○ 가입자격 및 수혜대상

- 소를 실질적으로 사육하는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 기금 수혜대상 소는 판매일 기준 飼育家の 구입 또는 어미소에서 젖을 떼지 60일이 자

나야 한다.

- 사육가는 매분기 소의 구입 및 판매내역이 포함된 NSC소정양식을 관할 NSC에 제출해야 한다.

○ 補助金 산출 및 지급

- NSC는 매분기 종료후 해당분기의 補助金 지원규모를 결정 지급한다.

- 산출방법

A : 해당분기의 마리당 판매가격

B : 해당분기의 마리당 사육경비

C : 지난 5년간 해당분기의 마리당 판매가격 평균치

D : 지난 5년간 해당분기의 마리당 사육경비 평균치

S : 마리당 보조금

$S = \langle B + 90\%(C - D) \rangle - A$

* 사육경비 및 판매가격 평균치는 NSC에서 각지역 소 사육농가의 경비 및 시장가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결정한다.

- 보조금 지급대상은 사육가당 매분기 2천마리에 한하며 판매량이 2천마리가 안될 때는 잔여분을 다음 분기에 포함한다.

마.基金額: 현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Alberta·Ontario·PE Island 등 3개州로 州마다 현지실정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운영함은 물론 분기별로 기금을 조성 및 집행하기 때문에 기금액 파악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3. 기타 農畜産物관련 支援制度

캐나다는 광활한 國土를 배경으로 農·牧畜業이 발달해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Programs)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는 基金·설립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물론 마케팅·신규작물개발 지원·각종 융자제도 및 보험등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Ⅲ. 프랑스

1. 밀

가. 基金의 造成방법 및 성격

○ 프랑스에서는 밀·보리·옥수수 등 곡물 생산자가 수확된 곡물을 매각키 위해서는 반드시 農業協同組合 또는 중간 도매상인들을 거쳐야 하는데, 農協 및 도매상인들은 각각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國立穀物事務所(ONIC : 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Céréales)에 납부한다.

○ ONIC에의 세금외에 기금의 가장 큰 비중은 유럽 農業保障基金(FEOGA: Fonds Européen d'Orientation et de Garantie Agricole)으로 이 기금도 ONIC에서 접수해서 프랑스 곡물업자들에게 분배한다.

○ 프랑스 農業部에서도 이 기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 따라서 이 기금은 EC차원의 기금에 流通業者에 대한 세금, 그리고 정부의 직접 지원금이 혼합된 성격을 띠고 있다.

나. 設立년도 : 1940년 11월 17일

다. 基金運用방법 및 현황·용도

기금의 대부분은 밀의 수출시 국내시세와 국제시세의 차액보조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 ONIC 운영자금으로 이용된다.

라. 基金額

기금액수는 기금의 가장 큰 부분인 FEOGA가 ECU로 되어 있어 환율에 따라 매년 증감이 있으나 대개 비슷한 수준이다.

86년 기금액은 農協및 流通業者 세금 F.Fr2억, FEOGA F.Fr53억, 農業部지원 F.Fr2억 등 합계 F.Fr57억이었다.

마. 補助金지급여부와 현황

○ ONIC기금 이외는 밀에 한정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은 없고 신규농업인력에 대한 정착금지원·기술교육훈련지원·퇴직농민지원금·타농업지로의 移農·농민에 대한 대출 장학금 제도 등이 있다.

○ 위의 지원금들은 CNASEA(Centre National pour l'Amenagement des Structures des Exploitations Agricole, 국립농업구조개발연구센터, 1965년 설립, 87년 예산 F.Fr62억) 및 FASASA (Fonds d'Action Sociale pour l'Amenagement des Structures Agricoles, 농업구조정비를 위한 사회활동기금, 1962년 설립, 農業部 예산)의 양대 기관에서 운영한다.

바. 기타

○ 農畜産物에 대한 租稅감면제도는 없다.

○ 프랑스는 EC 共同農業政策에 의거 대외 농업교역정책을 행하고, 수출시는 FEOGA로 보조금을 지원하나 수입에 대한 별도 보호정책은 없다.

2. 포도주

가. 基金適成방법 및 성격

○ 전술한 곡물의 ONIC처럼 ONIVINS(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Vins)라는 기구가 있어 이를 관장한다.

○ 이 기구의 기금은 農業部 예산과 FEOGA 예산으로 이루어지며 국립기구로서 農業部 및 經濟財務部 양쪽 모두의 산하기관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다.

나. 設立년도 : ONIVINS는 1983년 3월 18일 설립되었으나 이의 前身인 ONIVIT(Office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s Vins de Table)는 1976년, ONIVIT의 前身인 IVCC(Institut des Vins de Consommation Courante)는 1953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다. 基金運用방법 및 현황·용도

○ 87년의 경우 農業部기금 총 F.Fr.11억 9,694 만중 포도 재배및 포도주 산업구조재편에 F.Fr.4억4천만, 단기재고처리지원금 F.Fr.1억2,750만, 재배단지도면구성 F.Fr.5,567만, ONIVINS운용예산 F.Fr.7천만 등이다.

라. 基金額 : 87년 기금액은 農業部지원 F.Fr.11억9,600만, FEOGA F.Fr.9억 400만 등 총 F.Fr.21억이었다.

마. 補助金 지급 및 輸出지원등 내용은 밀의 경우와 같다.

IV. 臺灣

1. 食糧平準基金(쌀)

가. 基金設立목적 및 연도

臺灣정부는 72년 비료·糧穀교환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식량 공급원의 확보 및 양곡가격의 안정을 위해 74년 식량평준기금을 설치했다.

○ 基金造成방법

- 정부예산
- 기금운용 소득 및 이자
- 기타

○ 基金의 용도

(基金운용 범위)

- 米穀 시중가격이 政府告示 收量가격을 하회할 때 告示가격으로 구매

- 米穀 시중가격이 정부고시 구매가격을 상회할 때 市價를 참작해서 구매

- 生産 매출자금을 市價로 계산해서 회수

- 米穀 증산에 필요한 물자의 海外구매

(基金으로 구매한 米穀의 운용)

- 米穀의 수요·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합리적인 穀價수준 유지

- 軍·公·教育公務員用 미곡 배정

- 미곡 비축

- 需要量을 초과하는 미곡은 輸出 또는 기타 용도로 전용

나. 米穀收買방법

미곡수매는 3가지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 계획수매 : 보증가격을 기준으로 1ha당 970kg수매

○ 農會(농업협동조합)에서 농가의 잉여미곡을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 ha당 수매량은 각 지역 穀價변동과 창고 보관능력을 참작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 식량생산자금을 無利자로 대출하고 비료대금을 미곡으로 환산, 상환한다.

매년 1~2기의 계획 구매가격은 당기 미곡생산비용에 20%의 이윤을 가산해서 결정한다.

다. 基金運用실적 : 74년 식량평준기금을 설치한 후 76~87년 기간중 운용실적은 다음과

같다.

○ 米穀구매액 : 494억원

○ 米穀구매량 : 930만 t

○ 농민이익(미곡평균市價와 정부 구매가격의 차이) : 307억원

○ 무이자 대출 미곡생산자금 : 130억2천만 원

○ 무이자 대출로 인한 농가이자부담경감액(시중은행 일반신용 대출금리 기준) : 6억8천만 원

라. 基金규모 : 臺灣은 1974년 4월 식량평준기금을 설치, 75년부터 85년까지 정부예산에 의해 조성된 기금액은 총 252억 원이다.

마. 基金運營상황 : 식량평준기금은 기금 자체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매년 상당액의 결손액을 내고 있는데, 75~87년 기간중 발생한 결손액 누계는 648억5,957만 원에 달하고 있다.

臺灣정부는 기금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0~81년과 84~87년에 걸쳐 도합 191억8,414만 원의 결손 보조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결손 보조금은 기금의 결손액 규모에 크게 미달해서 식량평균기금은 87년말 현재 456억7,543만 원의 末補填결손액(결손액 누계 - 정부의 결손 보전액 누계)을 안고 있다.

바. 基金의 당면 경영문제

○ 국고출연기금의 소진 : 臺灣정부의 국고출연기금액은 총 252억 원, 76~87년 기간중의 결손 누계액은 648억 원으로서 이 결손 누계액은 정부예산에 의해 192억 원이 보전되었으나 장부상 결손액은 여전히 457억 원에 달함으로써 基金자체가 완전 소진되었을 뿐 아니라 장부상 20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 米穀수매자금의 金利부담 가중 : 기금 자체의 자금 제한으로 은행 차입자금에 의한 미곡 수매가 불가피함으로써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86년말 현재 은행 차입자금은 총 337억 원으로서 매월 1억5천만 원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米穀 수출제한으로 保管米 처리곤란 : 臺灣·美 미곡협정에 의해 臺灣의 미곡수출이 81년도 1인당 GNP가 795弗수준과 같거나 그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제한됨으로써 미곡수출의 혼란이 가중되고 그에 따른 보관상의 추가적 부담이 따르고 있다.

2. 臺灣 雜穀發展基金

가. 基金 설립목적 : 이 기금은 국내잡곡(대두·옥수수·소맥·수수·보리 등)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생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잡곡의 안정적인 비축과 공급, 農産 및 畜産品의 증산 촉진을 목적으로 72년 7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나. 基金 조성

○ 정부기관 및 관련사업기구 출연금과 매년 경비 수입의 20%를 할애해서 기금 조성

○ 경비수입은 당초 수입자(군용잡곡제외)로부터 수입허가서상의 중량에 따라 t 당 40원을 출연형식으로 징수, 그후 이 출연금은 미곡의 잡곡 전환재배와 국내산 잡곡의 보증 수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84년부터 t 당 242원으로 상향조정 88년부터 잡곡(大宗물자라 칭함)의 輸入自由化가 실시됨에 따라 잡곡출연금 징수 폐지

다. 基金 운영

○ 經濟部 위탁으로 재단법인 臺灣雜穀發展基金會가 출연금을 대행 징수해서 基金化한 후 국내산 옥수수·대두·수수 등 3개 잡곡산품의 보증가격 수매시 市中가격과의 차액을 보조하는데 사용

○ 기금은 이밖에 잡곡물 재배의 機械化, 미곡의 발작물 전환을 위한 설비개선, 잡곡 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축산물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지출

○ 88년 8월말 현재 기금 비축자금은 6억원

3. 小麥平準基金

가. 概況

臺灣정부는 옥수수·소맥·콩 등 주요곡물의 국제가격 파동시 국내 식량공급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비해서 각 곡물별로 平準基金을 설치 운용해 왔다.

이른바 大宗곡물 평균기금은 88년부터 대중

곡물의 輸入自由化가 실시되면서 小麥을 제외한 기타 곡물의 평준기금은 폐지되었다.

나. 基金運營 變遷과정

臺灣정부는 72년 국제적인 소맥 감산과 소련의 대량 소맥 구매로 국제소맥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소맥분 平準製度를 실시했는데,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 評價보조기간(72년 11월~75년 5월)

— 국제소맥價格 변동에 대응해서 72년 11월 1일 소맥분評價基金을 설립, 소맥평가표준을 t 당 C&F 66弗로 책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맥분公會를 통해 中央銀行에 보조신청

— 기준금액은 74년 C&F 136.90弗, 75년 C&F 180弗로 조정, 75년 소맥가격의 하락과 政府補助金의 팽창에 따라 75년 5월 25일 평가보조 취소

— 평가보조기간중 대출된 보조금액은 43억 5,500만원으로 이자는 전액 中央銀行에 부담

○ 評價취소기간(75년 5월~79년 1월)

— 75년 5월 소맥분평가시책 취소당시의 소맥 수입가격은 평가 취소전 기준가격보다 낮았으나 中央銀行 보조금 상환기준은 t 당 C&F 180弗로 하고, 輸入소맥가격이 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것은 이 차액을 기금에 교부해서 대출금 상환등으로 사용토록 한다.

— 그후 국제소맥가격이 오름에 따라 수입소맥중 일부 기준가격을 초과한 것은 C&F 180弗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가격 이하의 차액은 3분의 1을 中央銀行에 납부하고 3분의 2는 특별구좌에 입금해서 잠정 유보토록 한다.

○ 現行 基金運用방법

— 臺灣정부는 78~79년의 세계적인 小麥감산에 따라 79년 2월 1일 현재의 소맥평준기금을 설립하고 經濟部산하에 小麥平準基金委員會를 설치

— 소맥평준기금위원회 : 대만구 소맥분 공업 동업공회, 경제부 국제무역국, 중앙은행, 재정부, 경제부(위원 5명)

— 經濟部 물가독도회보는 국제소맥가격에 파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國內市場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예상될 경우 국내의 경기동향과 수

입업체에서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수입되지 않은 수량의 평균단가, 그리고 당시의 基金지출현황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平準基準 및 하류상품의 平均價格을 산출한다.

평준기금위원회는 평준기준 및 평균가격을 근거로 해서 輸入소매가격과 평준기준과의 차액을 회수 또는 補塡해 주고 있다.

즉, 수입가격이 평준가격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기금으로 흡수하고 반대로 수입가격이 평준가격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기금에서 보조해 준다는 것이다.

— 經濟部 물자독도회보자료에 의하면 평가보조기간을 포함해서 73~87년중 기금의 총 회수금액은 70억 元으로서, 보조금액은 46억 元, 잉여금(보유금액)은 24억 元에 달한다.

小麥 平準價格추이

(단위 : C & F US\$ / t, 元 / 斗)

조정일시	기준가	가공품 적정가격		
		고 급	중 급	저 급
82.12. 1	200	330	318	315
83.11.10	210	338	326	322
84. 2.23	210	343	331	327
85. 7. 1	205	343	331	327
85. 9.25	190	321	309	306
86. 3.22	180	318	306	302
86. 6.16	170	310	298	295
87. 1.26	170	289	278	274
87. 5.26	170	275	264	260
87. 9. 9	160	256	246	243
88. 1.10	165	(세포함) 253	243	240
		(세포함)		

4. 基金利度 이외의 支援시책

가. 補助金

○ 臺灣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해 中國농촌부흥연합위원회·臺灣省 양식국·臺灣省 菸酒공매국 臺灣糖業공사 등의 사업단위를 중심으로

농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업시책은 주로 농업금융자금 대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臺灣농민은행·臺灣토지은행·臺灣省 합작금고·農會 신용부 등 농업금융기구들이 정부사업 단위와의 연계 아래 농업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臺灣정부는 또한 天災地變등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生産農家가 타격을 입게 될 경우 보조금 지급 및 租稅감면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臺灣정부는 계속적인 가뭄으로 미곡을 비롯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南部지방 경작농에 대해 ha당 1만5천 元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리회비 1,800 元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 금번 지원시책으로 耕作農들은 ha당 1만 7천 元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작농의 실제 이익은 정상적인 생산 상황하에서 경작농들이 획득할 수 있는 경작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러나 臺灣은 日本과 같은 農作物災害보험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農會에 의한 가축보험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나. 濃畜產物 輸出入 관련시책

○ 현재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特惠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농산물 수출가격 하락시 生産農家の 손실을 補塡하는 방법으로 農會산하에 기금제도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정도이다.

○ 농산품의 輸入開放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국내 생산농가들이 입게 될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經濟部 國際貿易局은 농산물 수입 예비경고제도를 수립하고 과일류를 중심으로 수입량을 규제하고 있다.

한편 行政院 經濟建設委員會는 최근 농산품 무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不公正貿易에 대한 제재와 국내농업규제, 예비경고제도 등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인 農產品 輸入管理法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KOTRA 海外市場발취)